

# 제 718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

건 명 : 마들지하차도의 1개소 정밀점검 용역

심 사 일 : 2013. 7. 19

사업개요

- 용역비 : 31,500천원
- 용역기간 : '14. 3 ~ '14. 8
- 시설규모 : 법정외 시설물(지하차도 2)
  - 마들지하차도 : 폭 18m, 연장 304m
  - 노원지하차도 : 폭 18m, 연장 304m
- 발주부서 : 북도부도로사업소 (교량보수과)

심사결과 : 적 정 (**조건부**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(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) ■ 대 상 □ 미대상	○ 대상 시설물은 법정외 시설물로서 전차용역에서 평가등급이 <b>B등급</b> 이상으로서 상태가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자체점검 (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한 합동점검)을 시행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향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알림 : 주요 공종이 자체시행대상 용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부서 자체추진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가락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 감액 : 31,500천원 → <b>0천원 (감)</b> - 자체시행 : 용역비 감 31,500천원  ※기술용역발주기관 자체시행기준(부시장방침 10058호, '11.7.8)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○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설물 현황에 적합한 과업내용서 작성 및 용역비 정산철저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, 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○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 최소화